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규약 및 성차별·성폭력·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내규 제정 2012년 2월 28일

개정 2018년 2월 27일

개정 2019년 2월 26일

개정 2023년 2월 28일

1.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규약

[전 문]

한국독립영화협회 모든 회원과 활동가(한국독립영화협회 주최 사업의 모든 활동가를 지칭한다. 이후 활동가로 줄임)는 자유롭고 평등한 삶과 공동체를 지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폭력을 거부한다. 특히 성(sex, gender, sexuality)에 기반을 둔 육체·정신·환경적 폭력 행위를 반대하며, 우리 안에서 사회적으로 내면화된 차별의식을 없애고, 전통적으로 고정화된 성 역할을 탈피한다.

성평등한 문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회원 및 활동가는 성에 기반을 둔 차별 및 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한 모든 회원과 활동가는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올바른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모든 회원과 활동가는 위 모든 것들을 머리·마음·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찰하는 자세로 평등문화약속문과 규약을 준수한다.

[성평등위원회 구성과 역할]

성평등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규약]에 따라 한국독립영화협회 회원·활동가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성평등위원회는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사건 발생시 처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위원은 1년 임기의 상시직으로, 성평등위원회의 장은 이사장 및 이사회 과반수의 추천 또는,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추천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한국독립영화협회 평등문화 약속문]

다같이 읽는 '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약속'

성/폭력은 '문제 있는 개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묵인되고 재생산되는 조직문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성/평등한 조직을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우리의 조직문화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 우리는 나이, 성별, 성적지향, 성적체성, 장애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관계, 경력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2.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경어를 사용하고, 호칭이나 존댓말/반말은 상호 동의하에 결정합니다.
3. 나이, 성별, 성적지향, 성적체성, 장애 등 소수자에 관한 고정관념이 담기거나, 비하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4. 성차별적 농담, 음담패설에 웃지 않고 정색합니다.
5.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지 않고, 거부의를 표현하면 즉시 중단합니다.
6. 성/폭력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받을 경우 변명하기 보다는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충분히 사과합니다.

7.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습니다.
8. 스킨십은 친밀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서로를 동료로서 존중하고, 친밀감과 폭력을 구분합니다.
9. 모두가 공평하게 발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합니다.
10.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지 않으며,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항의합니다.
11.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에 유의합니다.
12. 이성애중심적인 연애, 결혼, 가족 발언에 유의합니다.
13. 연애와 결혼은 필수가 아님을 유의합니다.
14.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을 목격할 때 즉각 개입하고, 가해자를 저지합니다.
15. 성별 역할이 정해져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함께 합니다.
16. 우리는 이 약속문을 조롱하지 않으며, 기억하고 실천합니다.

[함께 기억해요!]

- 불편함을 말하는 것은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 문제에 대한 지적은 구체적으로! 단호하게!
- 발언과 행동에 대한 싫다는 표현은 그 상대를 전면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 나의 행위가 성희롱인지 아닌지는 행위자인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변명은 더 큰 잘못을 낳게 되므로 삼갑니다.
- 불편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방관자의 시선으로 '양 당사자'에게만 해결을 맡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누구나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문제제기를 받은 경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어린 사과를 합니다. 우리는 문제제기를 받은 회원·활동가의 고민 과정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돕습니다.

2. 성차별·성폭력·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정의

1.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2. 성희롱이라 함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 관련 법령 상 범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4. 인권침해라 함은 신체 조건(출신 국가·출신 민족·종교), 가족의 형태 또는 가족의 상황(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

- 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위계서열에 따른 부당한 대우나 폭력 등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권 문제를 말한다.
5. 2차 피해라 함은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가해자 이외의 자가 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6. 대리인이라 함은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을 말한다.
7. 사건의 해결이라 함은 성차별·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2차 피해 사건으로부터 피해를 회복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이행한 처리 과정과 결정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모든 회원과 활동가 사이에 발생한 성차별·성폭력·인권침해·2차 피해 사건에 적용되며, 한국독립영화협회 외부에서 성차별·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2차 피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든 회원과 활

동가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조 사건의 신고

- 피해사실이 있는 이는 이메일, 전화, 방문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성평등위원회의 안내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에 관해 논의하고 외부기관으로 공식적인 신고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 성평등위원회는 (연계 기관 외의) 심리적·법적·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을 안내할 수 있다.
- 피해자 및 대리인이나 목격자 등 제3자가 피해사실을 성평등위원회에 신고하면, 성평등위원회는 즉시 해결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 회원과 활동가 중 가해자로 지목되어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건의 경우, 별도의 신고접수가 없더라도 '제 6조'에 따라 가해사실 조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조사여부 및 조사단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에 따른 조치는 '제 7조'를 따른다.

제4조 대책위원회의 구성

- 신고 접수 이후 3주 내에 대책위원회 구성 또는 외부 전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대책위원회 구성

- 성평등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사건의 공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성평등위원회, 대책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는 비밀을 유지한다.
- 대책위원회의 구성은 성평등위원회 위원을 기본으로 하며 피해자와 협의하여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과 외부전문기관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대책위원회에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가 있을 경우 그 사건 처리에 대해 해당 위원의 참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외부 전문기관 이관

- 성평등위원회는 사건의 사안 및 한국독립영화협회 사정에 따라 신고자와 협의를 통해 사건을 외부 전문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 외부 전문기관으로 사건을 이관하여도 한국독립영화협회의 1인 이상은 외부 전문기관과 한국독립영화협회 사이의 소통 및 공유를 담당하여야 한다.

제5조 대책위원회의 역할

- 대책위원회는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을 수행하고 조사 결과 및 징계 수위, 사건 처리에 대한 결정사항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대책위원회는 신고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대책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신고인의 요구를 존중해야 하며, 신고인에게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 대책위원회는 조사과정 중 조정 절차와 중재 권고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갈등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 대책위원회는 사건 모두를 기록하고 공개/비공개 여부를 고려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사건의 사실조사

1) 대책위원회의 사실조사

- 대책위원회는 해결절차 개시 즉시 사실관계 및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다.
- 사실조사 기간은 대책위원회 구성 이후로부터 최대 12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단 신고인, 피신고인 등 당사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협의하여 1회에 한해서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 대책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등의 진술,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에 기반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심의한다.
- 대책위원회는 회원에 대하여 징계 및 시상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건의 피신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전항의 요구를 받은 피신고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징계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대책위원회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14일 이내에 피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신고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고, 소명방법을 알려야 한다.
- 피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책위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사실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외부 전문 기관의 사실조사

- 외부 전문 기관은 대책위원회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절차를 개시하며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다.

- 성평등위원회는 외부 전문 기관이 사실조사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7조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1. 조정 및 합의권고: 대책위원회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합의 권고는 조사 및 심의 중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2. 조치권고: 대책위원회는 조사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될 경우 당사자 및 운영위원회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3. 징계요청: 대책위원회는 조사·심의 결과 법령·한국독립영화협회 정관·한국독립영화협회 내규에 따라 회원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인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제8조 사건 피해자의 존중

-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 사건해결은 피해자중심주의에 따라 진행한다.
(*피해자중심주의란 성별권력관계에 기반해 가부장적 시각과 언어로 구성되어왔던 '객관성'을 해체하고, 성폭력을 소수자의 경험과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피해자의 의미 체계에서 그 행위가 성폭력으로 의미화 된 '과정'과 '맥락'을 살펴야 한다.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 전체를 위임하거나 처벌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며, 경험에 대한 독점적 해석을 주장하는 개념도 아니다. 비슷한 말로는 '피해자 관점'이 있다.)
-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신고인과 그 대리인을 보호해야 하며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자신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 본인이 답변을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신청할 권리
- 사건해결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안할 권리
-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

해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피신고인의 가해사실에 대한 조치

- 대책위원회는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사과문 작성, 내부 또는 외부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이수, 실명공개, 일정기간의 활동 및 자격 정지, 제명' 등 조정·합의·권고·징계의 수위를 결정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조치 사항의 결정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 조치의 수위를 상향 조정하여 가중 징계할 수 있다.
- 사건의 공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성평등위원회, 대책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신고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가해자의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이수 비용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행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 결정조치나 명령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가해행위가 반복될 경우 한국독립영화협회에서 주관·연계하는 사업에서 가해자를 배제하며, 재정지원 등 가중 징계를 논의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가해자의 탈퇴 등의 요청사항을 반려할 수 있다.
- 제9조의 조치는 한국독립영화협회 내부 구성원의 가해사실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외 사건의 가해자가 한국독립영화협회 외부에 존재할 경우 제14조에 따라 사건의 공동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 사건의 공개

- 대책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한국독립영화협회 내에서의 공감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수위와 공개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건의 종결

사건의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경우 사건을 종결한다.

제12조 2차 피해

- 성폭력 가해자에 동조하는 회원의 발언, 행위,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받아 성평등위원회에 신고하면, 그 사건은 별도의 사건으로 다룬다.
- 피해자가 원하여 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는 중 이를 공개하는 모든 회원과 활동가의 경우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3조 회원과 활동가의 의무

- 모든 회원과 활동가는 성평등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건 해결의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모든 회원과 활동가는 공개된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와 징계절차를 공유할 의무가 있다.
- 모든 회원과 활동가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말과 행동을 각별히 유의한다.
- 모든 회원과 활동가는 사건의 예방을 위한 성평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미 이수시 회원 혜택 및 활동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 공동해결

- 모든 회원과 활동가 중 1인 이상이 관련되어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성평등위원회는 본 내규에 의거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단,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타 단체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 타 단체가 공동 해결을 위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건에 따라 성평등위원회 혹은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가 사건 해결을 위한 협조를 촉구할 수 있다.

제15조 사건의 예방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회원과 활동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성평등 교육은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다. 그 밖에 성평등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 및 임시위원회에 대한 지원

위원과 임시위원으로 결함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휴가 신청, 업무 조정, 상담 등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핫라인

: kifv_hotline@kifv.org

* Tel. 02-334-3166 / (0420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6, 422호